('06.11.8.수, 파견과 도급 관련,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)

파견과 도급의 실태 및 개선방안

1. 파견과 도급 실태 및 문제점

□ **파견근로와 사내하도급** 등이 인력수요에 신속한 대응,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**증가하는 추세**

□ '06.6월 현재 **파견근로자수는 68천명**으로 증가 추세('05년말 대비 11천명 증가)이나, 파견대상 업무 제한 등으로 억제되고 있음

* '파견법'상 파견대상 업무를 지식·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**26개 업무와 일시적·간헐적 업무로 제한** (근로자 파견 현황 : 별첨 1)

o 파견근로는 비서·타자원, 전화외판원 등에 집중(상위 3개업무에 파견근로자의 59.7%), **근로조건은 타 비정규직에 비해 양호한 편**

* 합법파견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('05.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) : 사회보험 적용률 85% 수준, 임금차별 정규직 대비 8.0~16.8% 수준(한시적 근로자 11.2~31.6%, 용역근로자 24.9~30.2%)

- **파견업체는 대부분 영세**(파견업체 25%만이 100인 이상 파견), 파견인력은 상용형 파견보다 등록모집형 파견으로 운영되는 등 파견시장 후진적

o **경영계는** 파견 허용업무 한정으로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에 미흡하다고 불만, **파견 대상업무 확대를 요구**

- **노동계는**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, 고용불안, 비정규직 고착화 등을 이유로 **파견근로 확대에 반대**

*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호주, 일본 등 **주요국**은 원칙적으로 **파견대상에 제한이 없는** negative 방식

□ **사내하도급, 외주 등이 산업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**되어 있으나,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**실태파악이 어려움**

o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제한 → 기업의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 →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위장도급, 사내하도급 등으로 우회

* **불법파견 판정사업장 사례**(원청근로자수, **사내하도급 근로자수**) : 현대하이스코(686명, **430명**), KM&I(111명, **274명**), 기륭전자(274명, **302명**)

2. 파견과 도급의 개념 및 구별 기준

□ 파견과 도급은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의 일치 여부로 구분됨

o **파견**은 **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**하되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**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**(지휘·감독)하는 것을 의미

- **도급**은 수급사업주가 **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관계를 유지**하면서 도급인과의 약정계약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

o 실제 현장에서 **파견과 도급이 혼재**되어 나타남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이 쉽지 않고, **판정결과에 대해 불복**하는 사례도 발생

* 노조불복(KTX 승무원), 사용자불복(현대차, 하이닉스-매그나칩 등)

- 특히, **사내하도급**의 경우 **사내하청업체의 원청 종속적인 특성**(근무시간, 업무량, 작업배치권 등)으로 불법파견 판정에 어려움

▲ **사내하도급**이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도급계약을 맺고,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,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**하청사업주의 지휘·명령**을 받아 수행하는 도급 형태

□ **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**을 명확히 하고 **불법파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**

o **검찰**(서울중앙지검)에서 **파견법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해설서**를 작성하여 일선기관에 배포('06.9.30)

- **노동부**는 법원판례, 검찰 판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**현행 고시를 보완, 사례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** 마련 예정

* 검찰, 노동법학자, 공인노무사 등으로 T/F 구성

3. 근로감독 현황 및 한계

□ **'04년부터 사내하도급** 비율이 높은 조선 등 8개 업종 **특별점검 실시**

* 특별점검업종 : 조선·철강·화학·전기전자('04), 자동차·IT·기계금속('05), 사무판매서비스('06)

o '04~'06.9월 2,582개소 점검하여 453개의 불법파견 사업장 적발, 시정조치(96개소) 및 사법처리(205개소) 등을 통해 **불법파견 감소에 기여**

- 사내하도급 특별점검 외에 파견업체·사용업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실시('05년 2,662개 기관 점검, 파견법 위반 554건 적발)

('06.11.8.수, 파견과 도급 관련,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)

< '01년 이후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단속실적 >

기 간	조사대상(개소)	조사결과(개소)		법위반에 대한 조치내역(건)				
		적 법	불 법	사 법 처 리	직 접 채 용	적법도급전환	파 견 전 환	기 타
'01～'03년	**127**	14	**113**	50	17	15	3	35
'04년	**677**	409	**268**	168	38	11	3	104
'05년	**876**	705	**171**	30	17	16	4	124
'06.9 현재	**1,029**	1,015	**14**	7	5	2	-	29

□ 불법파견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사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**불법파견 근절에 한계**

《불법파견 근절이 어려운 원인》: 행정지도 및 제재수단의 미비

o 2년 초과 적법파견에 적용되는 원청업체의 **고용의제가 불법파견에는 부정(법원판례)**되면서 원청업체 직접고용을 위한 행정지도에 한계

▲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시 **고용의제 조항**(파견법 제6조제3항)을 적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또는 적법도급 등을 통해 시정을 지도

▲ **법원은** 불법파견에 대한 명문규정 부재를 이유로 **고용의제조항 적용을 부정**

* '06.11.30 국회를 통과한 **개정 파견법은 불법파견시** 사용사업주의 **직접고용의무 부과**

- 불법파업 판정시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대량 실직과 장기 분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(하이닉스-매그너칩, 현대 하이스코, KM&I 등)

o 노동부에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입건·송치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**행정지도의 구속력을 약화**

* '04～'05년 사법처리 내역중 징역형 또는 300만원 초과한 벌금형 사례없음

4. 파견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

□ **불법파견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법·제도 개선**

o **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부여**, 처벌수준 강화('06.11.30 국회 통과한 비정규직 입법에 기 반영)

* 사용사업주 :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3년, 2천만원 이하

o **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·시정**('06.11.30 국회 통과한 비정규직 입법에 기 반영)

-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사건의 신속 정확한 판정을 위한 판정기준 마련. 노동위 조직·인력 등 확충 계획은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

o **파견허용 직종**을 **확대·조정**하여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불법파견의 소지도 축소(파견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)

□ 원·하청간 노사관계 합리화 도모

o 원청기업 시설 내 사내하청의 노조 활동과 관련, 하청 근로자의 노동권과 원청기업의 경영권·시설관리권이 **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지도**

▲ 사내하청노조는 원청기업의 경영권·시설관리권 존중하여 조합 활동

▲ 원청기업도 경영권·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정당한 조합 활동 존중

o 원청사업주의 노동관계법상 책임법위 확장 검토

* 부당노동행위 책임 부과(연대책임 부과 법리 원용 : 산업안전, 임금체불 사례 참고 등)

□ 파견사업장에 대한 지도·점검 등 현장 감독 강화

o 취약업종 사내하도급 지속 점검, 파견·사용사업체 지도·관리 등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합법적·합리적 파견근로 관행 정착

* 참여정부에서 현장감독 강화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: '02(630명)→ '06년(1,026명)

('06.11.8.수, 파견과 도급 관련,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)

[별첨 1]

근로자 파견 현황

□ 파견사업 현황

o '06.6월 현재 파견근로자 68,562명, 파견사업체 1,167개사로 '05년에 비해 11,178명(19.5%), 14개사(1.2%) 증가

<파견사업 현황>

(단위: 개소, 명)

연도별	파견사업체		사용사업체수	파견근로자수	실적업체당 평균	
	허가업체수	실적업체수			파견근로자수	사용업체수
2006. 6	1,167	919(78.7%)	10,205	68,562	75	11.1
2005.12	1,153	890(77.2%)	9,056	57,384	64	10.2
2004.12	1,061	829(78.1%)	8,081	49,589	60	9.7

□ 파견사업체 규모별 현황

o 파견사업체의 75.0%(875개사)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만을 파견하는 등 규모가 영세한 실정

<파견사업체 규모별 현황>

(단위: 개소, %)

구 분	계	0명	50인미만	50인 ~ 100인미만	100인 ~ 300인미만	300인이상
사업체수	1,167	248	627	119	121	52
비 율	100	21.3	53.7	10.2	10.4	4.4

□ 파견대상 업무별 근로자 현황

o 26개 파견대상업무중 상위 3개 업무에 근로자의 59.7% (32,202명)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, 23개 업무에 40.3%가 근무

< 파견대상 업무별 근로자 현황 >

(단위: 명, %)

업무내용	총 계	비서・타자원, 관련사무원	전화 외판원	수금원 및 관련근로자	자동차 운전원	간병인	기타
근로자수	53,842	20,046	8,154	4,002	3,451	3,017	2,760
비 중	100.0	37.2	15.1	7.4	6.4	5.6	5.1

* '06.6월 현재 파견근로자 68,562명 중 26개 파견대상업무 파견근로자 53,842명, 일시적・간헐적 파견대상업무 파견근로자 14,720명